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도입 및 가맹본부 거래조건 협의
개시 의무화 등〉

- 민병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000호)
- 문진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030호)

2024. 8.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황 승 기

목 차

I . 개 요	1
1. 민병덕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01000호)	1
2. 문진석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01030호)	3
II . 검토의견	6
1. 가맹지역본부의 권리 강화	6
2.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도입 등	14
3. 가맹본부 거래조건 협의 개시 의무화	21
4. 부칙 시행일	26

I. 개 요

1. 민병덕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01000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민병덕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4. 6. 26.
- (3) 회 부 일 : 2024. 6. 27.

나.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대등한 지위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여러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다양한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맹지역본부가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따라 일정 지역 내에서 가맹본부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나, 가맹본부의 불공정한 비용 청구,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 등 가맹본부의 우월적인 지위 남용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불공정행위로부터의 보호 대상을 주로 가맹점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어 가맹지역본부는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이에 가맹지역본부의 권리 강화를 위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및 보복 조치 금지 등 일부 조항을 준용하도

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가맹지역본부에 대하여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 및 보복조치 금지, 계약 갱신청구권 보장, 계약해지의 사전 통지 및 제재조치 등을 적용하도록 함.

또한,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을 위한 세부규정이 없어 가맹점사업자들이 단체의 실체를 알기 어려운 점이 있고,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성실히 응할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어 실제로 거래조건 협의가 원활히 되지 않고 있음.

이에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대표성 확보 및 협상력 제고를 위한 등록제를 도입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취소 및 취소시 청문 절차와 가맹본부가 등록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협의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제재조치를 신설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가. 가맹지역본부에 대하여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 및 보복조치 금지, 계약 갱신청구권 보장, 계약해지의 사전 통지 및 제재조치 등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2조의2 신설)

나. 가맹본부의 협의 횟수·주제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신설하는 한편, 단체 등록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의2, 안 제14조의3 신설 등).

다.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취소 사유 및 취소시 청문 절차를 신설함(안 제14조의3제4항 및 제5항).

라. 가맹본부가 등록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협의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제재조치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3조).

마.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변경등록에 관한 업무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제2항).

2. 문진석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01030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문진석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6. 27.

(3) 회 부 일 : 2024. 6. 28.

나.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가맹지역본부가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따라 일정 지역 내에서 가맹본부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맹본부의 불공정한 비용 청구,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 등 가맹본부의 우월적인 지위 남용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불공정행위로부터의 보호 대상을 주로 가맹점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어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또한 현행법에는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을 위한 세부 규정이 없어 가맹점사업자들

이 단체의 실체를 알기 어렵고,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성실히 응할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어 실제로 거래조건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대표성 확보 및 협상력 제고를 위한 등록제를 도입하고, 가맹본부가 협의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제재조치를 도입하는 등 관련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가맹지역본부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가. 가맹본부의 협의 횟수·주제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신설하는 한편, 단체 등록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의2, 제14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신설).

나.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취소 사유 및 취소시 청문 절차를 신설함(안 제14조의3제4항 및 제5항).

다. 가맹지역본부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 및 보복조치 금지, 계약 갱신청구권 보장, 계약해지의 사전 통지 등에 있어서 가맹사업자로 보도록 함(안 제15조의6 신설).

라. 가맹본부가 등록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협의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제재조치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3조).

마.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변경등록에 관한 업무를 한국공정거래
조정원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제2항).

II. 검토의견

1. 가맹지역본부의 권리 강화

□ 각 개정안은 가맹지역본부에 대하여도 가맹점사업자와 마찬가지로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및 보복조치 금지, 계약 갱신청구권 보장, 계약해지의 사전 통지 등을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민병덕의원안	문진석의원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6. (생략) 7. “가맹지역본부”라 함은 가맹본부와의 <u>계약</u> 에 의하여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의 모집, 상품 또는 용역의 품질유지,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영업활동의 지원·교육·통제		제2조(정의) ----- ----- ----- --. 1. ~ 6. (현행과 같음) 7. ----- ----- ----- <u>대행 계약</u> (이하 “가맹대행 계약”이라 한다)- ----- ----- ----- ----- -----

등 가맹본부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 ----- ----- ----- -----
8. ~ 12. (생략)		~. 8. ~ 12. (현행과 같음)
<u><신설></u>	<u>제2조의2(가맹점사업자의 의제) 가맹지역본부는 제12조, 제12조의5, 제13조, 제14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7조의2, 제41조제2항, 제42조 및 제44조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가맹점사업자”로 본다.</u>	
<u><신설></u>		<u>제15조의6(가맹지역본부에 대한 준용) 가맹본부와 가맹지역본부 간의 관계에 관하여는 제12조, 제12조의5, 제13조,</u>

제33조(시정조치) ①
 공 정 거 래 위 원 회 는
 제6조의5제1항·제
 4항, 제7조제3항,
 제9조제1항, 제10조
 제1항, 제11조제1항
 · 제2항, 제12조제1
 항, 제12조의2제1항
 · 제2항, 제12조의3
 제1항·제2항, 제12
 조의4, 제12조의5,
 제12조의6제1항, 제
 14조의2제5항, 제15
 조의2제3항·제6항
 을 위반한 가맹본
 부에 대하여 가맹
 금의 예치, 정보공
 개서등의 제공, 점
 포환경개선 비용의
 지급, 가맹금 반환,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맹사업
 자”는 “가맹지역본
 부”로, “가맹계약”
 은 “가맹대행계약”
 으로 본다.

제33조(시정조치) ①

 -----제12조제
 1항(제15조의6에 따
 라 준용되는 경우
 를 포함한다)-----
 -----제12조의5
 (제15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4조의2
 제3항·제5항-----

위반행위의 중지,
위반내용의 시정을
위한 필요한 계획
또는 행위의 보고
그 밖에 위반행위
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
다.

②·③ (생략)

제37조의2(손해배상책
임)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고 가맹본부가
제9조제1항, 제12조
제1항제1호 및 제1
2조의5를 위반함으
로써 가맹점사업자
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가맹점사
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가맹본부가

-----.

②·③ (현행과 같
음)

제37조의2(손해배상책
임) ① (현행과 같
음)

② -----

-----제12조
제1항제1호(제15조
의6에 따라 준용되
는 경우를 포함하
다) 및 제12조의5
(제15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④ (생략) 제41조(벌칙)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u>제12조의5</u>를 위반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한 자 2. 3. (생략) ③ ~ ⑤ (생략)		----- ----- ----- -----. ③·④ (현행과 같음) 제41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1. <u>제12조의5(제15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u>----- ----- ----- 2. 3.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	--	---

□ 현행법에 따른 가맹지역본부는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따라 일정 지역의 가맹점사업자가 일정한 품질이나 영업방식을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경영과 영업활동 교육·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음.¹⁾

○ 그러나 가맹본부의 불공정한 비용 청구,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 등 가맹본부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이를 방지할 명확한 규정이 없어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²⁾

□ 이에 각 개정안은 가맹지역본부에 대하여도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하게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 및 보복 조치 금지(제12조 및 제12조의5), 계약 갱신청구권 보장(제13조), 계약해지의 사전 통지(제14조) 등을 보장함으로써 가맹본부와 대등한 지위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각 개정안에 따른 가맹지역본부 보장 권리 사항 >

구분	적용 규정	내용	민병덕 의원안	문진석 의원안
권리 보호	제12조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 금지	○	○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7. “가맹지역본부”라 함은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의 모집, 상품 또는 용역의 품질유지,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영업활동의 지원·교육·통제 등 가맹본부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계약 무더기 해지에도 보호 못 받는 쉐수학 가맹지사」 (한겨레, 2022.10.26.)

「”세탁기 임대 강요하며 노예계약“...크린토피아 갑질 논란」 (JTBC뉴스, 2022.12.12.)

구분	적용 규정	내용	민병덕 의원안	문진석 의원안
	제12조의5	분쟁조정신청, 공정위 신고·조사 협조시 보복조치 금지	○	○
	제13조	계약 갱신청구권(최장 10년) 보장	○	○
	제14조	계약해지의 사전 통지(2개월 전)	○	○
제 재	제33조	시정조치	○	○
	제34조	시정권고	○	○
	제35조	과징금	○	X
	제37조의2	손해배상책임	○	○
	제41조제2항	벌칙	○	○
	제42조	양벌규정	○	○
	제44조	고발	○	○

○ 가맹사업거래가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가맹점사업자’의 구조로 운영되는 경우,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인한 피해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가맹지역본부에 대한 명확한 보호규정이 없어 이 법을 통한 구제가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³⁾

3) 현재 이러한 가맹본부의 가맹지역본부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경우 「공정거래법」 상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제45조) 등을 적용하고 있으나, 불공정거래행위로 포섭되지 않는 거래행위의 경우 보호에 한계가 있음.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2.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3.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4.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5.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6.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7.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8.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9.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나.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

가맹지역본부 또한 현행법에 따른 보호대상이라는 점을 이 법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가맹사업 분야에서의 가맹지역본부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입법취지로 보임.

□ 다만, 문진석의원안은 가맹지역본부의 권리 보장 사항에서 과징금 부과 규정을 제외하고 있는데, 가맹본부의 가맹지역본부에 대한 불공정행위 등을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하게 규제하려는 취지를 고려하면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이를 포함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임.⁴⁾

10. 그 밖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②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1항제9호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원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

⑤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규약(이하 “공정경쟁규약”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⑥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경쟁규약이 제1항제4호를 위반하는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4) 지난 제21대국회에서는 시정조치(제33조)·시정권고(제34조)·과징금(제35조)·손해배상책임(제37조의2)·벌칙(제41조제2항)·양벌규정(제42조) 및 고발(제44조) 규정도 함께 준용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 하였음(제411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부위원회 전체회의, 2023.12.14.)

2.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도입 등

- 개정안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제를 도입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3 신설 등).

현행	민병덕·문진석의원안
<u><신 설></u>	<u>제14조의3(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 등) 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다.</u> <u>1.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로만 구성되었을 것</u> <u>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u> <u>가.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전체 가맹점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가 가입</u> <u>나.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들이 가입한 가맹점사업자단체의</u>

가맹점사업자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

② 제1항에 따라 가맹점사업자 단체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명칭·목적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구성원의 자격·명부(구성원 수를 포함한다)
4.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
5. 회의와 의사결정방식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가맹점사업자단체(이하 “등록사업자단체”라 한다)가 그 등록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

	<u>다.</u> <u>④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u> <u>지사는 등록된 사업자단체가 다</u> <u>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u> <u>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u> <u>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할 수</u> <u>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u> <u>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u> <u>한다.</u> <u>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u> <u>법으로 등록한 경우</u> <u>2. 제1항의 등록 요건을 갖추지</u> <u>못한 경우</u> <u>3. 스스로 등록 취소를 요청하는</u> <u>경우</u> <u>4. 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u> <u>지 아니한 경우</u> <u>⑤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u> <u>지사는 제4항(제3호는 제외한</u> <u>다)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는</u> <u>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u>
제39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생략)	제39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 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② ----- ----- -----

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나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u>제1호</u>의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생략) <u><신설></u>	----- ----- ----- ----- -----, -----<u>제1호 및 제2호</u>----- ----- -----. 1. (현행과 같음) 2. <u>제14조의3에 따른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변경등록에 관한 업무</u> 3. (현행 제2호와 같음)
2. (생략)	

□ 현행법상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권 및 협의 요청권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가맹본부가 단체의 대표성을 문제삼아 협의에 성실히 응하지 않는 등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어 단체의 대표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나,

현재 가맹점사업자단체에 대한 감독기관의 신고·수리 절차 등이 없어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방법이 없는 상황임.

< 현행법 제14조의2 내용 >

제14조의2(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등) ① 가맹점사업자는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이하 “가맹점사업자단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특정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유지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복수의 영업표지를 보유한 가맹본부와 계약 중인 가맹점사업자의 경우에는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로 한정한다)로만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그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이하 이 조에서 “거래조건”이라 한다)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가맹본부는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와 우선적으로 협의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협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가맹사업의 통일성이나 본질적 사항에 반하는 거래조건을 요구하는 행위, 가맹본부의 경영 등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또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 또한, 현행법 제14조의2제3항 단서에 따르면, 복수의 사업자 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단체와 우선 협상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다수의 구성원으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를 판단할 제도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 특히, 현행법상 이와 같은 신고 및 공인절차가 없어 공정거래위원회 측에서도 정확한 가맹점사업자단체 현황(단체 수, 가입 가맹점사업자 수 등)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⁵⁾

5) 현재 공정위에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사단법인인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61개의 영업표지별 가맹점주협의회 연합단체일 뿐, 협의회내 각 회원사별 상세 현황이나 협의회에 속하지 않은 단체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파악하고 있지 않음.

□ 이에 개정안은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사업자단체의 설립을 공적으로 확인해주도록 하려는 것임.

○ 개정안에 따를 경우, 등록제라는 공적절차를 통해 단체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어 단체의 법적 지위 및 협상력 제고로 가맹본부와 사업자단체 사이의 협의를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사업자단체의 현황을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가맹본부에 우선협상대상 단체 선정의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 아울러 안 제14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서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요건 및 등록사항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등록 취소 사유 및 취소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난립 및 무분별한 등록을 방지함으로써 적정 단체가 설립·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보임.

□ 한편, 안 제14조의3제3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이외에 시·도지사도 등록기관으로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안 제39조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변경 등록에 관한 업무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가맹사업자단체 등록의 수월성·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수행을 위한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지사가 수행하도록 하며, 분쟁조정에 관하여도 시·도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을 참고⁶⁾할 필요도 있음.
-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와 시·도지사가 일관성 있는 등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 업무지침 등을 면밀히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지자체에는 단체 등록업무를 수행할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단체 등록기관을 공정거래위원회로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 공할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 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16조(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①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라 한다)에 가맹사업 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도지사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협의회를 둘 수 있다.

3. 가맹본부 거래조건 협의 개시 의무화

□ 각 개정안은 가맹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협의 요청 시 가맹본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규정(시정조치)을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안 제33조).

현행	민병덕·문진석의원안
제14조의2(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등) ① (생략)	제14조의2(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특정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유지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복수의 영업표지를 보유한 가맹본부와 계약 중인 가맹점사업자의 경우에는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로 한정한다)로만 구성된 <u>가맹점사업자단체</u> 는 그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이하 이 조에서 “거래조건”이라 한다)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 ----- ----- ----- ----- ----- ----- <u>가맹점사업자단체</u> 중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된 가맹점사업자단체는 ----- ----- -----.
③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가맹본부는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복	③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가맹본부는 협의 횟수·주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와 우선적으로 협의한다.

④ · ⑤ (생략)

제33조(시정조치)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의5제1항 · 제4항, 제7조제3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 제2항, 제12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 · 제2항, 제12조의3제1항 · 제2항, 제12조의4, 제12조의5, 제12조의6제1항, 제14조의2제5항, 제15조의2제3항 · 제6항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금의 예치, 정보공개서등의 제공, 점포환경개선 비용의 지급, 가맹금 반환, 위반행위의 중지, 위반내용의 시정을 위한 필요한 계획 또는 행위의 보고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기준에 따라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복수의 등록된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와 우선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33조(시정조치) ①-----

----- 제14조의2제3항 · 제5항-----

-----.

② · ③ (현행과 같음)

□ 현행법 제14조의2⁷⁾는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가맹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이에 대해 성실하게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가맹본부가 무응답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한 제재조항이 없어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권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⁸⁾

‘2023년 가맹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⁹⁾ 가맹점사업자단체와 가맹본부 간 주요 협의내용은 주로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①신메뉴·신제품 출시 및 상품 리뉴얼(26.1%), ②가맹점 운영정책 협의(20.8%), ③광고·판촉행사 등 협의(20.2%), ④영업정책 공유(18.5%) 등임.

7) 제14조의2(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등) ① 가맹점사업자는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이하 "가맹점사업자단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특정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유지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복수의 영업표지를 보유한 가맹본부와 계약 중인 가맹점사업자의 경우에는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로 한정한다)로만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그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이하 이 조에서 "거래조건"이라 한다)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가맹본부는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와 우선적으로 협의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협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가맹사업의 통일성이나 본질적 사항에 반하는 거래조건을 요구하는 행위, 가맹본부의 경영 등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또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8) ‘2022년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에 따르면,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한 개별 가맹점주 중 54.3%가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한 경험이 있으며, 이중 약 53.1%(전체 29.0%)의 가맹점주가 협의 요청을 거부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협의 요청 불응 사유를 주로 무응답, 회원명부 요구, 다른 가맹점단체와의 교섭 등으로 설명하고 있음.

9) 2023년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공정거래위원회, 2023.12.27.)

이러한 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있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상당수는 당사자간의 협상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보임에도 협의를 위한 만남이 성사되지 않는다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가맹본부로 하여금 안 제14조의3에 따라 등록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에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조치(시정조치)를 부과하려는 것임.

○ 개정안에 따를 경우, 현행 거래조건 협의요청권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단체가 대등한 지위에서 협의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또한,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협의 횟수·주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협의에 응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등록된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빈번히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하거나, 가맹점사업자단체 간 의견 충돌로 효율적인 협의가 어려운 경우 가맹본부에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보임.

□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의 부담 가중,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단체 간 갈등 심화, 관련 산업 위축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며, 올해 12월부터 필수품목 거래조건 협의제¹⁰⁾가 시행될 예정인바, 이를 통해 가맹점주의 협상력이 제고되고, 자발적인 협의 문화 개선이 기대된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4. 부칙 시행일

□ 민병덕의원안은 공포 후 1년, 문진석의원안은 공포 후 6개월을 시행일로 규정하고 있음(부칙 제1조).

현행	민병덕의원안	문진석의원안
<신설>	부칙 <u>제1조(시행일) 이 법</u> <u>은 공포 후 12개월</u> <u>이 경과한 날부터</u> <u>시행한다.</u>	부칙 <u>제1조(시행일) 이 법</u> <u>은 공포 후 6개월</u> <u>이 경과한 날부터</u> <u>시행한다.</u>

□ 개정안은 등록제 도입 등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요청권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설계를 위해 등록 요건 및 등록사항, 협의 기준 등 폭넓은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시행시

10) 필수품목 관련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 시 가맹점주와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올해 12월 5일부터 동 제도가 시행될 예정임

기는 하위규정 마련을 위한 기간 확보 측면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14
